

이주현 노무사 「핵심정리 사회보험법」
제8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(새흐름 20230324)

P208 9번 문제 내용수정

〈변경 전〉

- ① ㄱ: 1천분의 30 ㄴ: 1천분의 13
- ② ㄱ: 1천분의 30 ㄴ: 1천분의 16
- ③ ㄱ: 1천분의 50 ㄴ: 1천분의 11
- ④ ㄱ: 1천분의 50 ㄴ: 1천분의 16
- ⑤ ㄱ: 1천분의 100 ㄴ: 1천분의 13

09	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징수법 §14).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다(징수령 §12①).
----	--

〈변경 후〉

- ① ㄱ: 1천분의 30 ㄴ: 1천분의 13
- ② ㄱ: 1천분의 30 ㄴ: 1천분의 18
- ③ ㄱ: 1천분의 50 ㄴ: 1천분의 11
- ④ ㄱ: 1천분의 50 ㄴ: 1천분의 16
- ⑤ ㄱ: 1천분의 100 ㄴ: 1천분의 13

09	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징수법 §14).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다(징수령 §12①).
----	--

P219 32번 문제 내용수정

〈변경 전〉

- ① ㄱ: 55, ㄴ: 13
- ② ㄱ: 60, ㄴ: 13
- ③ ㄱ: 60, ㄴ: 16
- ④ ㄱ: 65, ㄴ: 13
- ⑤ ㄱ: 65, ㄴ: 16

〈변경 후〉

- ① ㄱ: 55, ㄴ: 13
- ② ㄱ: 60, ㄴ: 13
- ③ ㄱ: 60, ㄴ: 16
- ④ ㄱ: 65, ㄴ: 13
- ⑤ ㄱ: 65, ㄴ: 18

P403 7번 문제 내용추가

〈변경 전〉

-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.
- ②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.
- ③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.
-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24세가 된 때
- ⑤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.

〈변경 후〉

-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.
- ②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.
- ③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.
-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24세가 된 때 **소멸한다.**
- ⑤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.